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불용물품 폐기

1. 서울장학재단-123(2018.02.27.)호와 관련하여, 물품 중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및 훼손 등에 의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폐기처분하고자 합니다.

가.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(물품소요조회와 불용결정)

나.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(불용품의 폐기)

붙 임 1. 불용물품폐기(해체)조서 1부
2. 관련근거 1부. 끝.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담당 박소연

사무국장

전결3/2
송연숙

협조자

시행 서울장학재단-138 (2018. 3. 2) 접수 ()

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, 304(운니동,가든타워) / <http://www.hissf.or.kr>전화 070-8667-3506 /전송 070-4133-2258 / soy0503@hissf.or.kr / 부분공개(5)